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1
----------	------

2016년 9월 8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6년 9월 6일 상정, 보류)
제270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6년 9월 8일 재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 가. 제안이유
 - 하수도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 사업의 재정적자 개선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총인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재해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으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업종 및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사전에 알기 쉽도록 별표 2의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서식에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원안참조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2016. 7. 19. ~ 8. 8.) : 의견없음
- (2) 신·구 조문대비표 : 원안참조
- (3) 비용추계 등 자료 : 원안참조

4.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높아진 하수처리원가 대비 2015년 기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¹⁾이 67%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함으로써,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개선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임.

1) 일반적으로 요금현실화율은 총괄원가와 요금수익의 일치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요금현실화율이 100%이상 달성 되어야만 자체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요금현실화율이 높을수록 사용료 수익 대비 보상율이 높은 것으로서 사업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안 별표 2)

- 서울시 하수도사용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 인상을 통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2011년 37%에서 2015년 기준 67%까지 끌어 올렸으나,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최근 2년간 인상 없이 하수도사용료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표 1] 참조)

[표 1] 하수도사용료 인상 연혁(2001~2014)

연도	2001년	2003년	2005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평균인상율	22.5%	22%	35%	35%	20%	15%	14년 이후 인상 없음

- 금회 시장이 제출한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0%씩 인상하려는 것(누적 인상효과 33%)으로 인상 마지막 연도인 2019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8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요금현실화율 목표 85%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손익분기점으로 전망하고 있음.([표 2,3] 참조)
- 이로 인해 하수도사용료 세입이 현재의 5,790억원에서 인상 첫해인 2017년엔 6,317억원(증 527억원) 규모로, 요금인상 마지막 해인 2019년에 현재의 약 1.3배인 7,512억원 규모로 확대되어 부족한 서울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갈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표 2] 하수도사용료 인상 계획안(2017~2019)

구 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상율 (%)	-	10	10	10
평균사용료(원/톤)	519	571	628	691
현실화율(%)	67.0	73.1	78.9	84.8
예상수익(억원)	5,842	6,317	6,889	7,512

※ 가정용1단계 요금 : 현재 300원/m³ → 330원('17) → 360원('18) → 400원('19)

[표 3] 하수도사용료 연차별 인상안(업종별 구분)

구분 업종	사용구분(m^3)	연도별 단가(원/ m^3)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정용	30이하	300	330	360	400
	30초과 ~ 50이하	700	770	850	930
	50초과	1,070	1,180	1,290	1,420
욕탕용	500이하	330	360	400	440
	500초과 ~ 2,000이하	410	450	500	550
	2,000초과	470	520	570	630
공공용	50이하	550	610	670	730
	50초과 ~ 300이하	880	970	1,060	1,170
	300초과	1,000	1,100	1,210	1,330
일반용	30이하	380	420	460	500
	30초과 ~ 50이하	750	830	910	1,000
	50초과 ~ 100이하	1,140	1,250	1,380	1,520
	100초과 ~ 200이하	1,370	1,510	1,660	1,830
	200초과 ~ 1,000이하	1,440	1,580	1,740	1,920
	1,000초과	1,520	1,670	1,840	2,030
유출 지하수	m^3 당	300	330	360	400

- 만일 개정안과 같이 요금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표 4]에서와 같이 서울시 한 가구 평균 구성원 2.39명(2015년 말 기준)을 기준으로 1인당 월 하수도사용량이 $5.83m^3$ 인 점을 감안할 때,
 - 한 가구(2.39명)의 3년간 총 인상액은 1,390원/월이 되고, 3년간 1명이 추가 부담하는 요금은 월 580원이 되어 서민부담을 크게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표 4] 참조)

[표 4] 서울시 평균가구의 하수도사용료 변동 추이

(2015년 말 현재, 서울시 한 가구 평균 2.39명, 1인당 개인용 하수도사용량 $5.83m^3$ /월 기준)

가구 구성원 수	2016년 현재	2017년 인상	2018년 인상	2019년 인상	총 인상액(월)
1인 가구	1,750원	1,930원	2,100원	2,330원	580원/월
2인 가구	3,500원	3,850원	4,200원	4,660원	1,160원/월
서울시 평균(2.39명)	4,180원	4,600원	5,020원	5,570원	1,390원/월
3인 가구	5,250원	5,770원	6,300원	7,000원	1,750원/월
4인 가구	7,000원	7,700원	8,400원	9,330원	2,330원/월

※ 3년간 단계적 인상 후, 현재 대비 1인당 월 580원 추가 부담 ※ 자료출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가.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재정 현황

- 2015년 기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약 7,270억원의 약 78%인 약 5,669억원이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4년 이후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15년 기준 1m³당(톤당) 하수처리원가 775원(총괄원가 8,725억원) 대비 평균 하수도사용료는 519원(총수입 5,842억원)으로 현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67%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광역시 평균 70%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인상 후에도 여전히 6대 광역시 평균 이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참고로,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는 행정자치부 공기업 지침²⁾에 따라 2018년까지 요금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어, 서울시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절실한 것은 사실임.([표 5] 참조)

[표 5] 7대 특/광역시 연도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변화 비교

구 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평균
2014년	67.9	61.3	82.1	62.1	69.1	59.6	59.0	65.5
2015년	67.0	75.5	82.4	73.5	62.8	62.9	60.4	69.6
2016년	66.0	70.0	90.0	70.4	74.0	67.5	-	74.4
2017년	73.1	-	-	80.2	90.0	74.4	-	81.5
2018년	78.9	-	-	90.2	100.0	81.3	-	90.5
2019년	84.8	90.0	-	-	-	-	-	-

- 한편, 서울시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비교해보면, 상수도요금 현

2)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안전행정부 공기업과, 2014.6.)

실화율은 84.5%에 도달하였으나,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 대비 총괄원가가 115%에 달하고 있지만, 평균요금은 9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표 6,7] 참조)

[표 6] 2015년 서울시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비교

하 수 도			상 수 도			상수도대비	
총괄원가 (원/m ³)	평균요금 (원/m ³)	현실화율 (%)	총괄원가 (원/m ³)	평균요금 (원/m ³)	현실화율 (%)	총괄원가	평균요금
775.1	519.0	67.0	673.0	568.8	84.5	115.2%	91.2%

[표 7] 서울시 상·하수도사용료 비교

구 분 업 종	사용구분(m ³)	단가 (원/m ³)	
		하 수 도	상 수 도
가 정 용	30이하	300	360
	30초과~50이하	700	550
	50초과	1,070	790
옥 탕 용	500이하	330	360
	500초과~2000이하	410	420
	2000초과	470	560
공 공 용	50이하	550	570
	50초과~300이하	880	730
	300초과	1,000	830
일 반 용	30이하	380	800
	30초과~50이하	750	
	50초과~100이하	1,140	950
	100초과~200이하	1,370	
	200초과~300이하	1,440	
	300초과~1000이하	1,440	1,260
	1000초과	1,520	
※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		300	-

- 참고로, 2014년 사용료 기준 해외 주요도시와의 하수도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국가별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 하수도사용료는 해외 주요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서울의 하수도 발전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표 8] 참조)

[표 8] 서울시와 해외 주요도시 하수도사용료 비교

(가정용 최소구간 요금, 2014년 기준)

구 분	서울	동경	런던	뉴욕	베를린	비고
최소구간(원/m ³)	300	1,310	1,200	2,160	3,620	동경, 런던, 베를린은 기본요금 별도 부과

※ 자료출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나.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영향

- 2016년 3인 가구 월 평균 사용료 기준으로 공공요금의 월 지출액 ([표 9] 참조)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의 지출이 타 공공요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 9] 타 주요 공공요금과 비교

(2016년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사용료기준)

구 분	하수도사용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평균사용료 (원/월)	5,250	19,800	37,939	145,200
하수도 대비 비율	-	약 3.8배	약 7.2배	약 27.7배

※ 자료출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 금회 서울시의 인상안대로 2017년에 10% 인상될 경우 품목지수를 고려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16%로 전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³⁾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표 10] 참조)

3) 전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 산출식:

$$\frac{(\text{인상 후 품목지수} - \text{인상 전 품목지수})}{\text{전체물가지수}} \times \frac{\text{품목가중치}}{\text{전체가중치}} \times 100$$

[표 10]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인상율(안)	하수도 사용료(가정용 30m ³ 이하)		품목지수		전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
	인상 전(현재)	'17년 인상 후	인상 전	인상 후	
'17년 10% 인상	300원/m ³	330원/m ³	105.23	115.75	0.016%

※ 자료출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세부산정방법은 [붙임 4] 참조)

■ 결론

- 동 개정안은 현재 67%의 낮은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 하수도사용료를 2017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10%씩 인상하여 2019년에 현실화율 85%에 도달함으로써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고질적 적자운영을 일부나마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 2015년 하수처리 총괄원가 8,725억원 대비 사용료 수입은 67%인 5,842억원으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의 하수도사용료로는 늘어나는 하수도 재정요인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일례로, 최근 물재생센터 법정 방류수질 강화(2.0→0.5ppm)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는 법정 기준 총인처리시설을 이미 설치·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재정투입 속도가 느려 총인처리시설 건설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예측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설현대화, 하수관거개량 등 총 4조 2,5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행 하수도사용료 유지시 사용료 수입은 5년간 약 3조 4,751억원에 불과해 총 7,81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회 서울시 인상안은 지금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하수도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사용료 인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규수익사업 및 비용절감 등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하수처리원가를 절감해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만일의 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어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출산율 제고를 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에 대한 근간은 하수도 원가에 있으므로, 하수도 원가산정에 있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하수도 원가의 세부내역을 시민에게 항상 공개하여 투명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붙임] 1. 2015년도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 계산서
- 2. 하수도사용료 인상 계획(안)에 따른 특/광역시간 하수도사용료 비교표
 - 3. 202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투자계획
 - 4.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전체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붙임 1] 2015년도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 계산서

하수도 사용료 총괄원가계산서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비 고
하수수익 및 총괄원가	연간처리량(m³)(A)	1,452,097,576	
	연간조정량(m³)(B)	1,125,676,799	
	하수도사용료수익(C)	584,227,169	
	총괄원가(D)	872,547,577	총괄원가(D)=(I+J+X)-(Y+Z)
	결합액(E)	288,320,408	총괄원가-사용료수익(E=D-C)
	m³당요금(원/m³)(F)	519.00	사용료수익/연간조정량(F=C/B*1,000)
	m³당원가(원/m³)(G)	775.13	총괄원가/연간조정량(G=D/B*1,000)
	요금현실화율(%)	66.96%	사용료수익/총괄원가(C/D)
	인상요인(%) (H)	49.35%	(총괄원가-사용료수익)/사용료수익H=(D-C)/C
영업비용	영업비용 계 (I)	665,064,431	물재생센터 및 자치구 집행 영업비용
	인력운영비	74,167,019	
	일반운영비	15,960,206	
	연구개발비	10,138,360	
	약품·재료비	20,644,019	
	동력비	38,843,105	
	수선교체비	143,498,575	
	경상이전	18,084,897	
	슬러지처리비	33,696,938	
	감가상각비	309,524,256	
	기타영업비용	507,056	
	자본비용	자본비용계(J)	270,677,063
타인자본비용(K)		549,748	
자기자본보수(L)		270,127,315	요금기저*자기자본비율*적정투자보수율
적정투자보수율(M)		4.76%	
자기자본비율(N)		99.20%	자기자본/총자산
요금기저(O)		5,720,709,261	순가동설비자산+운전자본+건설중인자산 (O=P+W+V/2)
순가동설비자산(P)		5,217,719,895	(P=Q-R-S-T-U-U1)
총가동설비자산(Q)		5,378,088,726	
원인자부담금(R)		129,389,520	
공사부담금(S)		30,979,311	
건설중인자산(V)		443,732,670	
운전자금(W)		59,256,696	(영업비용-감가상각비-대손상각비)*2/12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X)	-	이자비용 제외
기타영업수익	기타영업수익 계 (Y)	37,557,025	
영업외 수익	영업외수익 계 (Z)	25,636,892	
	이자수익	1,242,647	
	타회계전입금수입	5,255,605	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액
	기타영업외수익	19,138,640	

[붙임 2] 하수도사용료 인상 계획(안)에 따른 특/광역시간 하수도사용료 비교표

□ 7대 특/광역시 하수도사용료(가정용 기준) 연도별 비교표

업종	사용구분(㎥/월)	2016년 사용료(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평균
가정용	0~10까지	300	360	320	360	280	420	280	337
	11~20까지	300	470	510	360	280	420	280	387
	21~30까지	300	500	560	360	440	560	390	468
	31~40까지	700	710	750	360	440	1,080	550	648
	41~50까지	700	710	860	360	640	1,080	550	700
	51 이상	1,070	710	1,470	360	640	1,080	550	802

업종	사용구분(㎥/월)	2017년 사용료(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평균
가정용	0~10까지	330	미정	320	420	330	460	300	366
	11~20까지	330	미정	510	420	330	460	300	404
	21~30까지	330	미정	560	420	530	620	450	516
	31~40까지	770	미정	750	420	530	1,240	630	714
	41~50까지	770	미정	860	420	770	1,240	630	784
	51 이상	1,180	미정	1,470	420	770	1,240	630	906

업종	사용구분(㎥/월)	2018년 사용료(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평균
가정용	0~10까지	360	미정	미정	490	370	500	300	415
	11~20까지	360	미정	미정	490	370	500	300	415
	21~30까지	360	미정	미정	490	600	700	450	560
	31~40까지	850	미정	미정	490	600	1,420	630	785
	41~50까지	850	미정	미정	490	860	1,420	630	850
	51 이상	1,290	미정	미정	490	860	1,420	630	850

업종	사용구분(㎥/월)	2019년 사용료(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평균
가정용	0~10까지	400	미정	미정	490	370	500	미정	453
	11~20까지	400	미정	미정	490	370	500	미정	453
	21~30까지	400	미정	미정	490	600	700	미정	597
	31~40까지	930	미정	미정	490	600	1,420	미정	837
	41~50까지	930	미정	미정	490	860	1,420	미정	923
	51 이상	1,420	미정	미정	490	860	1,420	미정	923

※ 표에서 '평균'은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평균값임

(향후 인상 예정이지만 '16년 6월말 현재 아직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미정'으로 표시하고 평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붙임 3] 202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 계
합계		7,476	7,947	10,649	8,501	7,994	42,568
하수관로 (투자사업 비)	하수관로 기능 개선	3,194	1,765	3,388	2,573	1,887	12,807
	노후불량정비사업	-	991	880	918	-	2,789
	관로 운영체계 개편	-	86	103	125	189	503
	공공하수도설치사업	-	23	47	50	92	212
	하수관로 소계	3,194	2,864	4,418	3,666	2,168	16,310
물재생센터 (투자사업 비)	시설현대화(1단계)	895	684	904	-	-	2,483
	중랑	449	234				683
	서남	446	450	904			1,800
	시설현대화(2단계)	-	-	389	1,184	2,333	3,906
	중랑			172	514	1,012	1,698
	서남			217	670	1,321	2,208
	시설현대화(3단계)	-	-	-	-	-	-
	중랑						-
	서남						-
	시설현대화 소계	895	684	1,293	1,184	2,333	6,389
	초기우수처리시설			37	144	328	509
	탄천			37	144	290	471
	난지					38	38
	총인처리시설	38	650	1,127	170		1,985
	중랑	9	160	305	50		524
	서남	9	160	170	30		369
	탄천	7	140	146	30		323
	난지	13	190	506	60		769
	서남분뇨	21					21
	난지환경개선	32	161	171	188	198	750
	차집관로성능개선	94	492	415	415	415	1,831
	탄천공원화	96					96
	슬러지자체처리시설	30	280	500	115		925
지역형 소규모 수처리시설 설치	5					5	
물재생센터 송풍기 개선	17					17	
물재생센터 소계	1,228	2,267	3,543	2,216	3,274	12,528	
유지관리비 (전체)	유지관리비	2,274	2,208	2,143	2,081	2,020	10,727
	운영경비	775	591	528	521	515	2,930
	기 타(예비비)	5	17	17	17	17	73
	유지관리비 소계	3,054	2,816	2,688	2,619	2,552	13,730

[붙임 4]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전체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

인상률(안)	1m ³ 당 하수도사용료(가정용 30m ³ 이하)		품목지수		전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
	인상 전(현재)	'17년 인상 후	인상 전	인상 후	
'17년 10% 인상	300원/m ³	330원/m ³	105.23	115.75	0.000161 (≒0.016%)

□ 산출 방식

○ 산출 근거: 통계청 물가지수 통계('16년 6월 기준)

○ 산출 식

$$\frac{(\text{인상 후 품목지수} - \text{인상 전 품목지수})}{\text{전체 물가지수}} \times \frac{\text{품목가중치}}{\text{전체가중치}} \times 100$$

① 인상 전 하수도사용료 품목지수: 105.23

② 인상 후 하수도사용료 품목지수: 115.75

※ 인상 후 하수도사용료 품목지수=(인상 후 사용료 ÷ 인상 전 사용료) × 인상 전 품목지수

③ 하수도사용료 가중치: 1.70

④ 총 물가지수: 110.67

⑤ 전체 가중치: 1,000

□ 산출 결과

○ '17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10% 인상 시

- 계산식: $\frac{[(330 \div 300) \times 105.23] - 105.23}{110.67} \times \frac{1.70}{1,000} \times 100 = 0.0001616428 (\approx 0.016\%)$

- 결론: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적용 시, '17년 총 물가지수 약 0.016% 상승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	
○ 관련 조례규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1. 교통요금 (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상·하수도사용료는 조례 규정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심의대상 제외, 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시, 선택적 심의는 가능	
- 03년 3월 '물가대책위원회 정비 및 내실화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 인상안은 총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0.016%에 불과하여 심의대상 제외가 타당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버스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와 같이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순환안전국은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신언근 위원)

답변)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안에 대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노후하수도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질의)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나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면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있는지?(신언근 위원)

답변) 현행 조례 제34조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선정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10톤 이내 사용량에 대해 면제하고 있으나,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은 부여하고 있지 않음.(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질의) 지금까지 물순환안전국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의 추진배경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여겨짐.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장홍순 위원)

답변) 지금까지는 홍보에 대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임.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계기로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질의)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산정의 원가산정 기준(방법)에 있어 타 광역시와 상이점은 없는지?(문종철 위원)

답변) 하수도사용료 원가산정 방법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하고 있

어 동일한 방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질의) 교육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는 요금업종이 구분되어 있는지?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운영에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음.(문종철 위원)

답변) 초·중·고교는 공공용 하수로 분류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징수·납부하고 있음.(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21
----------	---------

제안일자 : 2016년 9월 8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를 감면대상자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감면대상자로 추가 신설(안 제34조제1항제9호).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4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생략) 1. ~ 9. (생략)</p> <p>②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 신설></u></p>	<p>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9.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p>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u>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u> 10. (개정안 제9호와 같음) ② ~ ⑤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m ³)	연도별 단가(원/m ³)		
		2017년	2018년	2019년부터
가정용	30이하	330	360	400
	30초과~50이하	770	850	930
	50초과	1,180	1,290	1,420
욕탕용	500이하	360	400	440
	500초과~2,000이하	450	500	550
	2,000초과	520	570	630
공공용	50이하	610	670	730
	50초과~300이하	970	1,060	1,170
	300초과	1,100	1,210	1,330
일반용	30이하	420	460	500
	30초과~50이하	830	910	1,000
	50초과~100이하	1,250	1,380	1,520
	100초과~200이하	1,510	1,660	1,830
	200초과~1,000이하	1,580	1,740	1,920
	1,000초과	1,670	1,840	2,030
유출지하수	m ³ 당	330	360	400

※ 비고

- 매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및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p> <p>제34조(감면) ① (생략)</p> <p>1. ~ 8.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9. (생략)</p> <p>②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부칙 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p> <p>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